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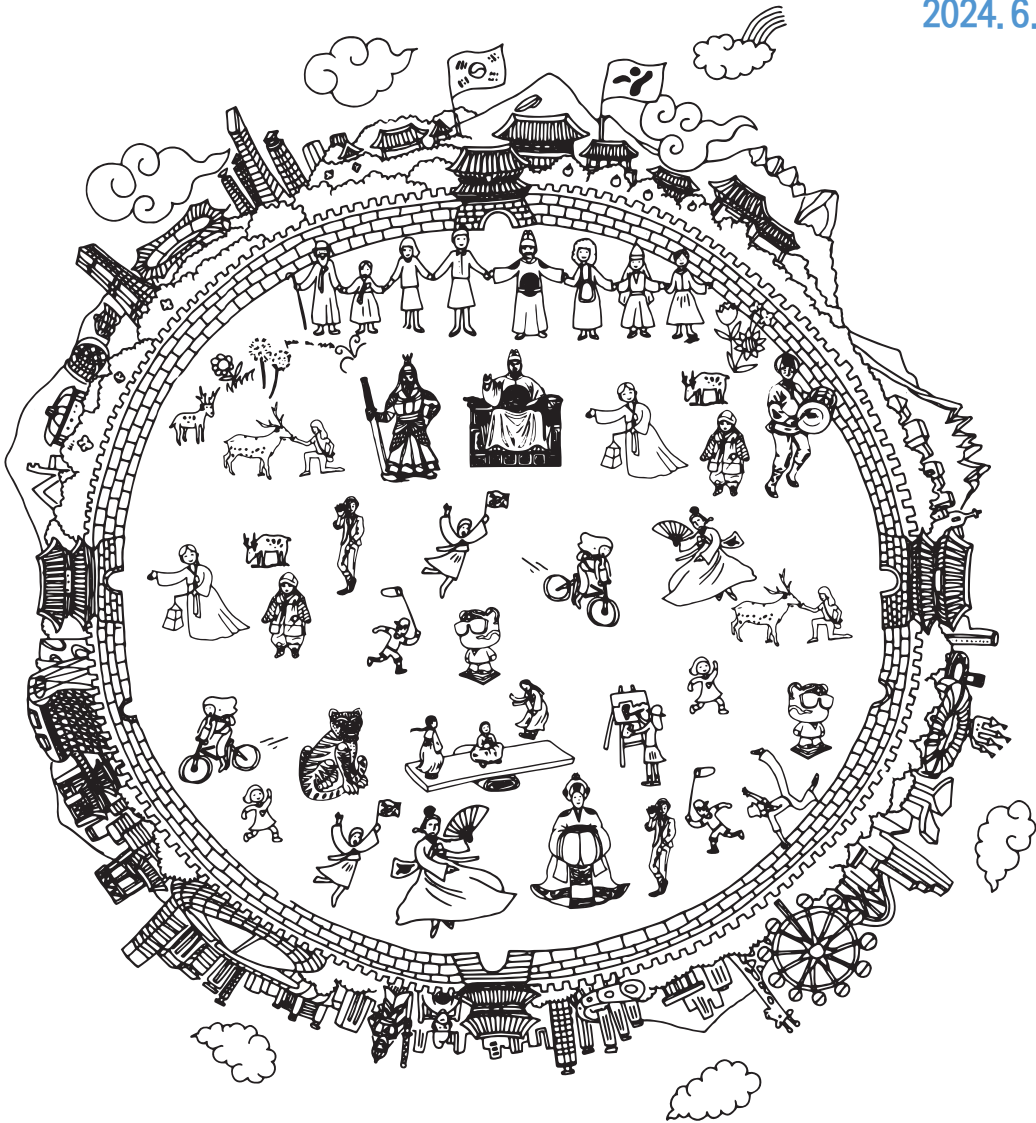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8호
2024. 6. 28.(금)



목 차**◆ 자치법규 등****[규 칙]**

제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4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제4643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9
제4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
제464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2

[훈 령]

제1057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55
--------	---------------------------------	----

◆ 고 시

제2024-32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74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홍보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홍보기획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을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를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중전의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글로벌도시정책관) 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다문화담당관·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조정
2.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 협력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5.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6.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7. 외국인 인력 분포, 고용 등 통계 관리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
5.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도시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태평양·유럽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2.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6.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7.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8.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총괄
5.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과의 교류·협력
6.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출생 및”을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으로, “가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인가구”를 “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양성평등담당관·영유아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아동담당관·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제6호 중 “시행, 일·생활 균형 업무”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장비, 안심이 시스템 등 안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중전의 제7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제1호 중 “영유아 및 초등돌봄계획”을 “돌봄 지원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중전의 제7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다문화담당관”을 “가족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8. 청소년 한부모·부모 지원 사업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상담시설 운영 지원

제6조(중전의 제7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보호”를 “보호·자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가구담당관”을 “저출생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 감독

4. 일·생활 균형 업무

5.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하고, 제17조의3(중전의 제7조의2)의 제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생노동국에 소상공인정책과·노동정책과·상권활성화과·공정경제과·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민생노동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노동정책과장·상권활성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3(중전의 제7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중전의 제7조의2)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중전의 제7조의2) 제3항(중전의 제5항)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시민시장 등 소상공”을 “소상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중전의 제7조의2) 제6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민생대책 종합계획”을 “공정경제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담당관”을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18.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를 제17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7조의4)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불납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데이터전략과·정보시스템과·정보보안과·정보통신과·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전략과장·정보시스템과장·정보보안과장·정보통신과장·공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데이터전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
6.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7. 디지털정책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9.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1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11.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관련 사업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데이터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총괄조정
3. 시정 주요 사업 기획·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⑥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2. 업무관리, 데스크톱가상화(VDI), 영상협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인 관리·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접수·배부, 우편물 접수·발송 등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시스템,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예약,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오피스, 인공지능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 ⑦ 정보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2. 정보보안감사 총괄 조정 및 시행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총괄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및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8.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및 유·노출 대응 총괄
 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13.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⑧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Wi-Fi,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운영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4. 소프트웨어기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운영
5.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6.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7.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8.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10.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서울시CCTV안전센터 구축·운영
11.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⑨ 공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수립·조정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3.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4.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간정보 통합·유통·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7.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8. 주소정보 정책 수립 및 조정·운영
9.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10. 지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서울맵 구축·운영
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2.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13.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5. 서울스마트블편신고 구축·운영
16. 공간정보 보안정책 관리·운영

제9조의 제목 “(디지털정책관)”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을 “미래청년기획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은 정보화사업”을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의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블록체인 플랫폼”을 “서울청년참여기구”로,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5.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7. 청년 주간 운영

제9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담당관”을 “청년사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삭제한다.

1.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청년 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5.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
6.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관리”를 “조직관리, 약자동행, 창의행정”으로, “공공자산 운용,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⑦ 약자동행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2.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8호 중 “도시경쟁력 평가”를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관리

제10조제11항제5호 중 “민간보조금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부재정지원”을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자산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를 “민간보조금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6.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기금관리 총괄
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의 제목 “(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를 “(경제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협력과·금융투자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첨단산업과·산업입지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

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을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협력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첨단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부터 제10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창조산업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제3호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창업과장”을 “금융투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을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지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 촉진지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⑩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뷰티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8.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중전의 제10항)제3호 중 “서울바이오허브”를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을 “바이오·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양자 기술 산업”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뷰티패션산업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중전의 제2호) 중 “패션·봉제산업”을 “뿌리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패션허브 추진”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뷰티허브 추진”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을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관리·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인쇄·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과장”을 “대학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서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삭제한다.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복지정책실에 두는 국·과)”를 “(복지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추진과장·안심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을 “돌봄·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돌봄·고독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소득추진과장”을 “안심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제9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복지실에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 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1항(중전의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돌봄복지과장”을 “돌봄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제2호 본문 중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을 “의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르신전문병원”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을 “노숙인 시설 확충·운영·지원·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를 “노숙인 복지”로, “비영리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점검”을 “노숙인 일자리·재활·자활·의료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지역자활계획 수립
4.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수립 및 상담활동
5.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지원과장”을 “고독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를 “독거어르신 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독·고립 대응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시행·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고독·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8.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

⑫ 1인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도시교통실에 두는 과)”를 “(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교통기획관”을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통실에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과·교통운영과를 둔다.
- ④ 교통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교통운영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15.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16. 주·정차위반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17. 사업용차량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감독
18.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20. 교통지도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장치에 관한 사항
21. 교통불편민원에 대한 조사·단속 등 처리
22. 교통사법경찰(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

제15조의 제목 “(문화본부에 두는 과)”를 “(문화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재정책과·문화재관리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보존과·문화유산활용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재정책과장·문화재관리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을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보존과장·문화유산활용과장·박물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를 “서울시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정책과장”을 “문화유산보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과 활용”을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주변”을 “국가유산주변”으로, “문화

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를 “국가유산 및 표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을 “국가유산매매업 및 국가유산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2호) 중 “문화재 보수·복원 정비”를 “국가유산 보수”로, “문화재보수”를 “국가유산 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서울미래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 안전관리 총괄 및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관리과장”을 “문화유산활용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 중 “박물관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를 “박물관정책심의위원회·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1.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12.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의2의 제목 “(시민건강국에 두는 과)”를 “(시민건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을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건강관리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공공의료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건강관리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재난응급의료 대응 및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6.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7.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9.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민의 보건, 의료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스마트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3호) 중 “어르신건강 증진”을 “서울형 헬스케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서울형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2제4항제7호 중 “응급의료”를 “서울형 헬스케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건강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형 헬스케어 추진”을 “임신 및 난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2제6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신건강사업 종합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
 12.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2제7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의료추진단장”을 “공공의료과장”으로 한다.
15.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3을 제17조의5로 하며, 제17조의5(중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행정국에 두는 과)”를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의무실·치과운영”을 “부속의원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한다.

제17조의6(중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재무국에 두는 과)”를 “(재무국)”으로 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민생사법경찰국) ① 민생사법경찰국에 경제수사과·안전수사과를 둔다.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경제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방문판매, 대부, 부동산, 상표 범죄(이하 “경제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경제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공중위생, 동물보호,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범죄(이하 “안전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안전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안전분야 수사 특화교육 등 수사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안전분야 수사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담당관·도시활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용산입체도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분양 및 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7.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8.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에 관한 사항

9. 용산공원 조성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도시활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제7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4호) 중 “사전협상제도”를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제도”로, “사전협상 추진”을 “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공공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9. 주요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민자사업 발굴 및 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10.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⑧ 도시활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활력을 위한 주요거점 종합전략 수립 및 총괄 조정
2. 도시활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기획 및 실행
3. 도시활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활력 콘텐츠 구상
4. 상암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디자인정책관”을 “제1항의 디자인정책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 ①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 ③ 디자인정책관 밑에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디자인정책담당관·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 제목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업무”를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정책, 건설기술, 건설업,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건설사업 관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8호) 중 “자문”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중전의 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중전의 제24호) 중 “설계 경제성”을 “설계경제성”으로 한다.

1. 건설정책 수립·총괄 조정

18. 불법·부조리 하도급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지도·감독

제19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⑤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 혁신대책 총괄
3.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운영
4.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건설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지원 및 모니터링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5.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민간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수행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5. 지진·화재 등 민간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재·관리 등에 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제20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실에 두는 과)”를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건설혁신과장”을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을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관”을 “재난안전기획관”으로, “시설안전,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를 “시설안전”으로,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보좌한다”를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④ 도로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0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중전의 제2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6호까지를 삭제한다.

16. 노면표시 정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행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도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4.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6.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7.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8.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9. 자치구 위임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도포장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1.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13.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5.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16.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제20조제13항(중전의 제1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량에서의 안전사고 및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의 제목 “(주택정책실에 두는 과)”를 “(주택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실에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주택정책지원센터·공공주택과·주거환경개선과·건축기획과·전략주택공급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재정비축진과·한옥건축자산과를 둔다.

② 주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공공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축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주택정책관은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사무를, 건축기획관은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의2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주택공급과장”을 “임대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으로, “지원·활성화”를 “제도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민간토지 활용”을 “임차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재개발·재정비축진·민영주택건설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다가구·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과장”을 “주택정책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주택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택시장 동향분석·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6. 준주택, 비아파트 등 공급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 주택배분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지원과장”을 “공공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를 삭제한다.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증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6. 역세권 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정비과장”을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제9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삭제한다.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빈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4. 휴먼타운 및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을 “건축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관리 강화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기획과장”을 “전략주택공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8호) 중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을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4.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16.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을 “사업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10.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개선과장”을 “주거정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재정비촉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용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정책과장”을 “한옥건축자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건축문화제 및 서울시 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20.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1조의 제목 “(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를 “(도시공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철도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도시공간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6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7항제6호 중 “연혁관리 및 도시계획 홍보”를 “연혁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계획 의제처리 포함)
 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8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11.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12항제1호 중 “토지행정”을 “부동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7.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거래상황 조사 및 부동산동향 작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인을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9. 조상 땅찾기 및 공공기관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제22조의 제목 “(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를 “(균형발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 제23조의 제목 “(푸른도시여가국에 두는 과)”를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원도시국에 정원도시정책과·공원여가사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동물보호과·산지방재과를 둔다.
- 제23조제2항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을 “정원도시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동물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여가정책과장”을 “정원도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10. 공원·산림 등 여가·문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9조제4항제2호 중 “문화재시설” 을 “국가유산시설” 로 한다.

제71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제8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4.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제90조제1항 중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을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상암정보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상암정보운영과장·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을 “중합관제시스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보시스템” 을 각각 “정보자원” 으로 한다.

1. 내부행정 전산장비 서버·주변기기 운영

5. 전산장비 유지관리

6. 데이터센터 정보자원(H/W, S/W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제9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 을 “상암정보운영과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클라우드센터” 를 각각 “상암센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4. 클라우드포털 및 관제시스템 운영

제92조제1항 중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 를 “진료부·간호부·약제” 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 을 “약제과장” 으로, “보한다” 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31병동간호과·32병동간호과·33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43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원무” 를 “진료부·간호부·약제부·원무” 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로, “보한다” 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14병동간호과·15병동간호과·17병동간호과·25병동간호과·34병동간호과·35병동간호과·53병동간호과·54병동

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를 “진료부·간호부·마약관리센터·약제”로,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과장·간호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진료부장·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로, “보한다”를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료부장”을 “진료부장과 제3항 마약관리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부에 간호행정과와 병동간호과를 두고, 간호행정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병동간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호사 근무”를 “공급실, 외래간호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간호부 내 행정에 관한 사항
2. 간호부 인력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4. 병동 내 간호인력 근무에 관한 사항
5. 병동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병동 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중독 검사,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2. 마약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
3. 마약류 중독 연구 및 교육
4. 마약류 중독 대응 관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제9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유적조사”를 “국가유산·유적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동대문역사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을 “동대문역사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 중 “교육홍보과장”을 “백제학연구소장”으로, “유물과학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을 “교육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시기획과장”을 “백제학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몽촌토성·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을 “몽촌토성·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백제집자리전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8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을 각각 “구의야구공원”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책 보물섬”을 “서울책보고 및 서울아트책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과 의”를 “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6호) 중 “도서관”을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5.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서관 등록·평가 등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제1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학예연구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중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4조제2항 중 “감사 및 인권”을 “감사”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을 “감사담당관·청렴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으로, “지방기

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권담당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제145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상감사”를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렴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3.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운영 총괄
4. 청렴·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5. 이해충돌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5조제3항제8호 중 “감사사항”을 “감사 및 조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감사담당관”을 “공공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 안전분야”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4.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제145조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담당관”을 “안전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4호) 중 “조사사항”을 “감사 및 조사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5.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7.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제145조제5항제8호 중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하도급호민관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담당관”을 “조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권

영향평가”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9호) 중 “조사사항”을 “감사 및 조사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정보 및 동향 보고사항의 처리
3.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5.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조사 및 처리
10.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제146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를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감사, 인권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9호) 중 “청렴계약”을 “공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0호) 중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를 “120현장민원”으로,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1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1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16. 인권교육 실시 및 시민 인권의식 확산
1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18.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

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화·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실장,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민생노동국장, 디지털도시국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민생사법경찰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22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정보공개담당관” 을 “정보시스템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을 “양성평등담당관” 으로 하고, “갈등관리협치과” 를 “평가담당관”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 으로,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 의 주관부서 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를 “창조산업과” 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의 주관부서 란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 로, “농수산유통담당관” 을 “농수산유통과” 로 한다.

별표 중 “기술심사담당관” 을 “건설기술정책관” 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란 을 삭제한다.

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 건설혁신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구청장
건설혁신 담당관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구청장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바. 시정명령·지시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안심돌봄복지과”를 “돌봄복지과”로, “소상공인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상권활성화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으로, “건설혁신과”를 “건설혁신담당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를 “정원도시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연번37번 “경제정책실” 및 “전략산업기반과”를 “경제실” 및 “산업입지과”로, 연번39번 “경제정책실” 및 “국제협력과”를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도시외교담당관”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리수본부”로, 연번20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연번58번 수습주무부서란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공공의료추진단”을 “공공의료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 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화과장” 을 “자원회수시설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화과” 를 “자원회수시설과” 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빅데이터담당관” 을 “데이터 전략과장” 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 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시민협력과장” 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시민협력과장” 을 각각 “기후환경정책과장” 으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노동정책담당관” 을 “노동정책과장” 으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간정보담당관” 을 “공간정보과장”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

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디지털정책과장, 데이터전략과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보안과장, 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협조처란 “국제교류과장”을 “도시외교담당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물품관리관란, 물품출납공무원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총괄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간결한 명칭으로의 기구 명칭 변경

- 전략적 이민·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글로벌도시정책관’ 과 부실공사 ZERO 서울 실현을 위한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실), 경제정책실(→경제실), 복지정책실(→복지실), 도시교통실(→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민생노동국), 디지털정책관(→디지털도시국), 재난안전관리실(→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정원도시국)

※ 직급상향 등을 반영한 명칭변경 : 미래청년기획단(→미래청년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민생사법경찰국)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 교통실에 ‘교통운영관’,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 주택실에 ‘주택정책관’, 재난안전실에 ‘도로기획관’ 각각 신설

다. 환경변화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기능 조정

- (여성가족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저출생담당관’ 신설
 - ▶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 1인가구 지원사업은 복지실로 이관
- (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사업담당관’ 신설
- (기획조정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 ‘약자동행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인구변화대응 기능 등 부서 간 업무조정
 -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
 -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운용 업무는 균형발전본부로 이관
- (경제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창업과를 ‘대학협력과’로 재편
 -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복지실) 돌봄 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전담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고독고립 문제 및 사회적 교류 지원 총괄 부서인 ‘고독대응과’ 신설

- (교통실) 교통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교통운영관’ 을 신설하고, 교통지도과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재편하여 주차계획과 산하로 편제
 -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관리과를 ‘문화유산보존과’ 및 ‘문화유산활용과’ 로 재편하여 문화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문화유산 복원·가치제고 기능 강화
 - ▶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업무를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각각 이관
 - (시민건강국) 시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과’ 를 신설하고, 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의료추진단 폐지하며 그 기능을 감염병관리과 및 공공의료과로 이관
 - (민생노동국)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 및 명칭 변경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와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 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보안과’ 및 ‘정보통신과’ 신설
 -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경제수사과’ 및 ‘안전수사과’ 부서 신설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담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설 및 편시
시 서울 조성 전담 ‘도시활력담당관’ 신설
 - (디자인정책관) 자율신설기구였던 디자인정책관을 행정2부시장 산하 보좌기구로 재편
 - (재난안전실) 도로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기획관’ 을 신설하고, 보도 안전관리 강화 및 특색있는 매력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신설
 - ▶ 건설혁신과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주택실) 주택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정책관’ 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주택공급기획관을 일반기구인 ‘건축기획관’ 으로 변경하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과’ 를 신설하고 주택실 내 부서 명칭 및 직제순을 변경
 -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균형발전본부)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기획관’ 을 일반기구화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 (시립병원) 병원 현장 간호서비스 제고 및 환자간호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3개 시립병원에 병동단위로 ‘병동간호과’ 설치
 - (감사위원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담당관’ 을 신설
 - ▶ 인권 관련 업무 기능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권 관련 업무를 위원회 소관으로 편제
 - 그 외, 행정국, 재무국, 도시공간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데이터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사무분장 현행화 등 조문 정비
- 라.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개정 7건, 직위 신규지정에 따른 개정 7건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62	429	1,146	5,166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08	420	368	4,979	225
-------	--------	-------	-----	-----	-------	-----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5	15		1	9	
부이사관	25	15		1	9	

같은 표 3·4급 소계란, 부이사관또는서기관란,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4급 소계	3	2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기술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	-----	-----	----	---	----	---

서기관	105	77	9	7	9	3
기술서기관	65	25			4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4	62			18	4

같은 표 4·5급 소계란,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 아래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4·5급 소계	2	1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1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의무란, 간호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복지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시설관리란 아래 행정또는간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급 소계	1,621	1,082	56	58	367	58
행정	756	552	52	26	74	52
사회복지	5	4			1	

공업	76	46			29	1
----	----	----	--	--	----	---

의무	72	4		4	64	
----	----	---	--	---	----	--

간호	27	3			24	
----	----	---	--	--	----	--

보건	12	12				
----	----	----	--	--	--	--

시설	221	150			70	1
----	-----	-----	--	--	----	---

방송통신	18	15		1	2	
------	----	----	--	---	---	--

시설관리	1	1				
행정 또는 간호	1	1				
행정 또는 녹지	15	5			10	
행정 또는 보건	6	6				
행정 또는 방송통신	11	9			2	
행정 또는 사회복지	15	15				
행정 또는 학예연구관	15	4			11	
행정·공업 또는 시설	73	64		1	8	
공업 또는 환경	12	11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식품위생란, 보건진료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 녹지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 환경또는환경연구사란, 토목운영란, 통신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0	1,958	176	110	1,387	99
행정	1,443	889	147	44	294	69
전산	102	76	3	3	18	2
공업	353	108	6	5	232	2
녹지	76	40			36	
간호	152	18			134	

식품위생	8	3			5	
보건진료	12	6			6	
환경	49	29		13	7	
시설	609	348	3	2	237	19
방재안전	4	4				
방송통신	59	36	3	2	18	
위생	8			1	7	
시설관리	38	11			27	
행정 또는 시설	48	46			2	
행정 또는 학예연구사	25	8			17	
행정·공업 또는 시설	76	69			6	1
행정 또는 전산	11	7	1		2	1
공업 또는 시설	16	9			7	
공업 또는 환경	10	2			8	
녹지 또는 시설	2	1			1	
간호 또는 보건	3	1			2	
환경 또는 환경연구사	6			6		
토목운영	2				2	
통신운영	8	3		1	4	

사무운영	27	8	1	2	15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간호란, 위생란, 간호조무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공업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시설란 아래 공업또는환경란을 삭제하며,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아래 방재안전또는녹지란을 삭제하고, 토목운영란 아래 건축운영란을 삭제한다.

7급 소계	3,267	1,302	123	131	1,654	57
행정	1,210	653	88	59	368	42
사회복지	35	25	1		8	1

전산	135	77	4	10	43	1
----	-----	----	---	----	----	---

공업	405	20	6	10	367	2
----	-----	----	---	----	-----	---

간호	141	13		3	125	
----	-----	----	--	---	-----	--

위생	1	1				
----	---	---	--	--	--	--

간호조무	1				1	
------	---	--	--	--	---	--

시설관리	6	2			4	
------	---	---	--	--	---	--

운전	56	12	1	2	41	
----	----	----	---	---	----	--

행정 또는 공업	10	3		1	6	
----------	----	---	--	---	---	--

행정 또는 시설	38	34			2	2
----------	----	----	--	--	---	---

행정 또는 전산	13	6			7	
----------	----	---	--	--	---	--

행정 또는 학예연구사	23	4			19	
-------------	----	---	--	--	----	--

공업 또는 시설	11	4			7	
----------	----	---	--	--	---	--

간호 또는 보건	2	1			1	
----------	---	---	--	--	---	--

기계운영	54	2	1	1	50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공업란, 간호란, 시설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토목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또는공업란 아래 행정또는농지란을 삭제하며, 토목운영란 아래 건축운영란·통신운영란을 삭제하고, 기계운영란 아래 화공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7	125	38	56	847	1
행정	98	14	7	11	66	

방호	81	24	6	3	48	
공업	98	4	2	4	88	

간호	108				108	
----	-----	--	--	--	-----	--

시설	75	5			70	
----	----	---	--	--	----	--

위생	5	2			3	
----	---	---	--	--	---	--

시설관리	175			2	173	
------	-----	--	--	---	-----	--

토목운영	1				1	
------	---	--	--	--	---	--

전기운영	14	1			13	
기계운영	12	1			11	

사무운영	116	39	13	15	48	1
------	-----	----	----	----	----	---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 시설관리란, 농업또는녹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업또는녹지란 아래 기계운영란·사무운영란을 삭제한다.

9급 소계	523	4	3	1	515	
공업	52				52	
시설관리	329	1		1	327	
농업 또는 녹지	4				4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위험물취급요원란, 다군 소계란,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60	28	4	2	126	
나군 소계	66	24	4	2	36	
위험물취급요원	2				2	
다군 소계	90				90	
동물사육	44				44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 기록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4		199	187	
연구사 소계	337	18		157	162	
학예연구	101	14		2	85	
기록연구	9	1			8	

같은 표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301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3으로 한다.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0		7,274		
---------	-------	-----	--	-------	--	--

소방령	184	28		156		
-----	-----	----	--	-----	--	--

소방사	3,666	25		3,641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 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3급 +7명, 3·4급 △2명, 4급 +10명, 4·5급 △6명, 5급 +36명,
6급 +4명, 7급 △13명, 8급 △30명, 9급 △9명

※ 본청 4급 1명 감축 및 상계를 위한 7급 증원은 '24년 10월 13일부터 시행

나.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군 조정 및 장기결원 조정

－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임기제) 퇴직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 (농업·녹지 9급 △4 → 전문경력관 +4)

－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전문경력관)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전문경력관 △1→ 공업(화공)·환경 6급 +1)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3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결합형인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이 입장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별표 1)

나. 입장료에 한해 이용요금 조정(별표 1)

다.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로 편입하는 경우,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1)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위탁증 등)” 을 “(위탁관리증 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공원시설관리자” 를 “공원관리자” 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감면” 을 “감액” 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에 따른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 감액
2. 조례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감액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 감면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규정 정비(제11조제3항)

-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 감액
- 조례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감액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대상 시설 및 감면범위(제2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치	대관료(8시간)	감면범위
1	문화비축기지 (T2)	마포구 성산동	(실내) 486,400원 (야외) 400,000원	무료
2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102,090원	무료
3	북서울꿈의숲 (창녕위궁재사)	강북구 번동	69,710원	무료
4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480,000원	무료
5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광진구 능동	250,000원	무료
6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동작구 대방동	300,000원	무료
7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양화동	400,000원	무료
8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39,710원	무료
9	한강공원 (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전) 1,000,000원 (오후) 1,200,000원	무료
10	SETEC (컨벤션센터)	강남구 대치동	665,500원	무료
11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434,000원 (4시간 기준)	무료
12	마곡광장 (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110,176원 (4시간 기준)	무료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4. 5. 20.)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규정(제1조)

나.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범위 규정(제2조, 별표)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7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간제노동자”라 함은”을 ““기간제노동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이라 함은”을 “장”이란”으로,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우”라 함은”을 “처우”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을 “본청·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요예산”을 “소요예산, 채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노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정책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험작업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의 안전확보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각각 “노동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을 “제3항”으로, “있다”를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 채용 후 노동정책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본문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정책담당관”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임” 을 “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임”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차별시정 등 고충” 을 “고충”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모성보호” 를 “모성·부성보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신체검사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 를 “기간제노동자” 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14조” 를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게 기간제노동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66조” 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노동계약기간” 을 “노동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을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기간제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제외한다.
- ⑤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당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직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로, “수행”을 “성실히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종”을 “따라 복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대 근로의 운영 방법은 사용부서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를 “비치하고,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노동승인서”를 “초과노동 승인서”로, “초과노동기록부”를 “초과노동 기록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까지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대제 근로를 하는 기간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만 5세”를 “5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간제노동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간제노동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기간제노동자”를 “여성 기간제노동자”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을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병역법」, 그 밖에”를 “「병역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제27조제1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참” 을 “지각” 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등” 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기간제노동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예방 및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누구든지 기간제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1조(중전의 제32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하고,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32조(중전의 제34조) 제1항 본문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 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 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한다.

제4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징계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계약 해지),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함).

1.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는 그 기간 중 노동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 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함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함

4. 경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42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사유)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4. 비밀엄수를 위반하였을 때

5.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4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기간제노동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용부서에서 제45조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⑩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안건 심의)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 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고,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결 기간)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청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등 관련 사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 제4조 관련 》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직종명	채 용 기 간 (부터~까지)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		
계약금액(월보수액)	○ ○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 ○		
채용방법 및 절차 (공개경쟁채용 여부, 면접시 제작가파제 운영 여부, 공정채용확인서 장구 여부 등)	○ ○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표준노동계약서

《 제9조 관련 》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기간제노동자 ○○○(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아래 노동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1. 노동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노동·휴게시간
 - 노동시간 : 00:00 ~ 00:00(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시간)
 - *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노동 및 휴일
 - 노동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 사용자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노동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 유급 주휴일 : ()요일, 사용자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급 :	없음(), 있음()	금 원
③ 수 당 :	없음(), 있음()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노동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7. 기 타
 - 가. “노동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노동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노동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마. 위와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의
의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노동자) 주 소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제11조 관련 》

주 소: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상기자가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발생시켜
○○○부서에서 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상기자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인) 생년월일: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인) 생년월일: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노동자 명부

《 제14조 관련 》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근 무 상 황 부

《 제20조 관련 》

(20 년. 월)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수	1일지급액	총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내역기재									
상기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인) 생년월일													
계좌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 제4조 관련 》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은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순으로 심사한다.

가. (채용사유의 적정성)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기 준	내 용
일시간월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과 기간을 심사한다.

다. (예산의 적정성)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직무 특성, 채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등 채용절차를 심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징 계 양 정 기 준

《 제43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경고 감 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 의 형이 확정된 자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 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 고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5. 친절·공정 의무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 직 정 직 정 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비위의 유형			
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제42조 관련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근무기간	~ (년 월)
	구분(직종)			
	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서식]

출석통지서

《 제44조 관련 》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직인

귀하

.....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직위(직급)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서

《 제47조 관련 》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근무부서)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상기 기간제노동자는 ○○에 처한다			
사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제47조 관련 》

소속 및 근무부서	구분(직종)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상기 기간제노동자는 ○○에 처한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처 분 권 자 직인 년 월 일

귀 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市 공무원 관련 규정과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기간제 노동자의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휴일 관련 규정,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등

나.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 명문화

- 기간제노동자 차별적 처우 금지(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 및 공무원의 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 공가 및 병가 중 일부 사항 반영

다.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징계 규정 준용

라. 시민불편 초래 규정 정비 결과 반영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 및 관련 서식 개정 등

마.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정비

- 채용절차의 공정성 관련 심사항목 추가
- 기간제노동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규정 신설
- 사전심사 예외사유 확대 및 해당 시 심사절차 간소화

바.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 성별 구분 용어를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명시

사. 서울특별시의회 규정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적용 제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4. 6. 27.)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자치구 추천일)
1	용산구	후암동30-2일대 (동후암1구역)	후암동30-2번지일대	104,070.7	2024.06.03.
2	영등포구	신길동314-14일대 (신길16-2구역)	신길동314-14일대	34,445	2024.03.27.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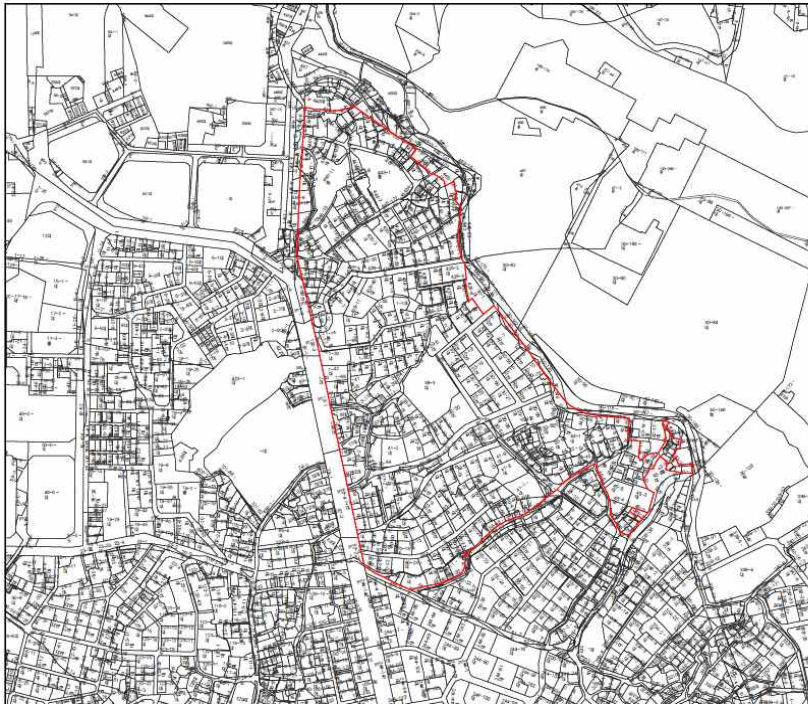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5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31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용산구 후암동30-2일대



동후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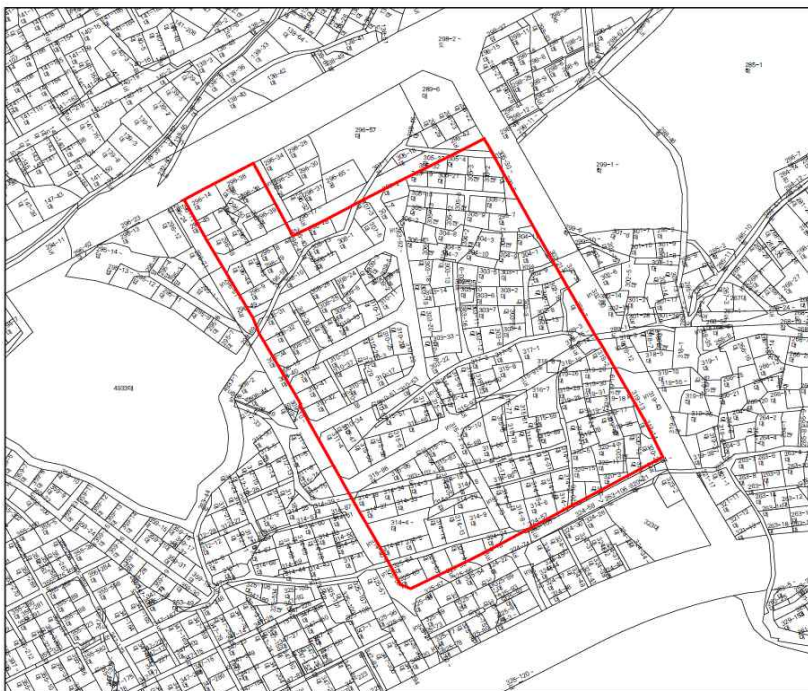
■ 범 례

구역계
지적선

Scale = 1 : 3,000

0 20 50 100m

○ 영등포구 신길동314-14일대



신길16-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범 례

구역계
지적선

Scale = 1 : 1,500

0 20 50 100m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